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5. 2)
-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 상 택

가. 제안이유

개별 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자금의 안전성,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타 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사업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 골자

-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안 제4조)
 -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 기타 수익금

-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안 제5조)
 -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용자
 -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용자
 -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안 제8조)
 -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예탁금·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안 제12조)
-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2006년 3월 현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구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동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 동 조례안은 17개 조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동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4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용어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한 안 제8조제5항 등에서 일부 내용은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동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과 동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도 신

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타기금 자체가 13개 기금 전부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여유자금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에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존속기한을 명시해도 상관없습니까?
- 답변요지(정상택 기획예산과장) : 예, 상관없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5. 2 박지위 위원 외1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한 안 제8조제5항 등에서 일부 내용을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특히 동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부칙에서 동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까지로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 제1호 “보유자금” 을 “여유자금” 으로 수정하며, 동 조 제2호 “보유자금 이라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를 “여유자금 이라

함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로 수정하고,

- 안 제4조 제1호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을 “다른 기금의 여유 자금에서 예탁된 자금” 으로 수정하는 한편, 동 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 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동 조 제3항 중 “12인” 을 “14인” 으로, 제5항 제1호 중 “의원 1인” 을 “의원 2인” 으로, 제2호 중 “민간 전문인 4인” 을 “민간 전문인 5인” 으로 하며,
- 안 제9조 내지 제17조는 각각 제10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 안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6. 5. 2.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의 용어 정의를 규정한 안 제2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을 규정한 안 제4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규정한 안 제8조제5항 등에서 일부 내용을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수정하고, 특히 동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부칙에서 동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까지로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가. 안 제2조제1호 중 “보유자금”을 “여유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유자금”이라 함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나.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된 자금

- 다.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 라.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를 각각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마.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12인”을 “14인”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 중 “의원 1인”을 “의원 2인”으로, 동조제5항제2호 중 “민간 전문인 4인”을 “민간 전문인 5인”으로 한다.
- 바.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는 각각 안 제10조 내지 안 제18조로 한다.
- 사.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보유자금” 을 “여유자금” 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유자금” 이라 함은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약된 자금

안 제4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를 각각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12인” 을 “14인” 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 중 “의원 1인” 을 “의원 2인” 으로, 동조제5항제2호 중 “민간 전문인 4인” 을 “민간전문인 5인” 으로 한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7조는 각각 안 제10조 내지 안 제18조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통합관리기금” 이라함은 각 기금의 <u>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u>을 말한다.</p> <p>2. “보유자금” 이라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u>현금(예금을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원안과 같음)</p> <p>1. _____ <u>여유자금</u> _____</p> <p>2. “<u>여유자금</u>” 이라 함은 구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p>
<p>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자원) (생략)</p> <p>1. <u>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u></p> <p>2. <u>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u></p> <p>3.-5. (생략)</p>	<p>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자원) (원안과 같음)</p> <p>1. <u>다른 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예탁된 자금</u> (삭제)</p> <p>2.-4. (원안 3.-5.와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신설)</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 ⑤ (생략)</p> <p>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1인</p> <p>2.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인 4인</p> <p>제9조(위원장의 직무) - 제17조(시행규칙) (생략)</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5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 제8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원안 제5조 - 제7조와 같음)</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14인 -----</p> <p>④ - ⑤ (원안과 같음)</p> <p>1. ----- 의원 2인</p> <p>2. ----- 민간 전문인 5인</p> <p>제10조(위원장의 직무) - 제18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p> <p>부 칙</p> <p>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4.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개별 조례에 의거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자금의 안전성, 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타 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의 사업에 용자 지원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제정골자

가.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안 제4조)

-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 (4) 통합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 (5) 기타 수익금

나.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안 제5조)

-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용자
- (2)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용자
-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다.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안 제8조)

-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2)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 (4) 예탁금·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5)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안 제12조)

마.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재정 국장으로 한다.(안 제13조)

3. 제정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06. 3. 16 ~ 2006. 4. 0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4. 1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라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라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 금고”라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4.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5조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용자
2. 타기금 및 주차장 등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의 용자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5.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제6조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 예탁금에 대하여는 통합관리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예탁금·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관리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⑤ 위원은 구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1인
 2.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인 4인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심의 안건과 심의 내용 등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